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이병진·조 국·임호선

윤준병 · 송옥주 · 임미애

이연희 • 한정애 • 한민수

이원택 • 윤후덕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,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 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"방지시설"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·교체하지 못 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하고자 함.

또한,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(안 제35조제7항 신설 및 제82조제3항제3호).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2조제3항제3호 중 "아니한"을 "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5조(방지시설의 설치・설치면	제35조(방지시설의 설치・설치면		
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) ①	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) ①		
~ ⑥ (생 략)	~ ⑥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・도지		
	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		
	<u>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</u>		
	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		
	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		
	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		
	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	
제8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82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		
	같음)		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		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		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	3		
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			
하지 <u>아니한</u> 자	아니하거나 거짓으로		
	<u>변경 신고를 한</u>	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